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알고리즘 등의 개념 정의 및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규정 신설〉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57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알고리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 등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항 신설) ..	2
2.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과태료 규정 (안 제44조의11, 제44조의12 신설)	4
※ 참고자료	13
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검토의견	13
2. 한국인터넷자율기구 검토의견	1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1. 3.

다. 회 부 일 : 2025. 11.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최근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기존 성향을 강화하여 확증편향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콘텐츠의 삭제·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을 신고·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15호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알고리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 등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알고리즘 및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 정의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u>14.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제의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연산·논리·규칙 및 과정을 말한다.</u> <u>15.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란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 등을 기반으로 알고리즘</u>

현행	개정안
② (생략)	<u>을 활용하여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u>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알고리즘’ 및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알고리즘 및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적 정의가 광범위하여 모든 프로그래밍 기법이 포함될 우려가 있으며, 입법 취지와 달리 예상하지 못한 행위가 규제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정치적 편향을 발생시키는 문제에 맞추어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과태료 규정

(안 제44조의11, 제76조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의 종류 및 적용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고, 불만의 접수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여 그 완화조치를 마련하게 함(안 제44조의11제1항).
- 투명성 확보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및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4조의11제2항).
- 기준 공개, 절차 마련, 평가 및 완화조치 마련, 보고서 제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안 제76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44조의11(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의 종류 및 그 적용 방식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할 것</u> <u>2.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을 전자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u> <u>3.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가 이용자의 권익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시스템적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완화조치를 마련할 것</u>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기존 성향을 강화하여 확증편향과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설명요구권에 근거한 알고리즘 작동 방식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및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의 영향평가 실시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법제화 하려는 것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자율 규제 성격의 가이드라인인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제정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 ① 이용자를 위한 정보공개로서, 추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의 추천시스템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약관 등의 방식으로 통지하고, 콘텐츠 배열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 (성별·연령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②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으로서, 추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콘텐츠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이러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콘텐츠 자동배열에 이용되는 주요 사항을 선택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③ 자율검증 실행으로서, 추천서비스 제공자는 상시적으로 추천서비스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자율검증체계(추천서비스의 위험 예측·평가 및 통제, 추천서비스의 영향 확인, 추천시스템 기록 등)를 갖춰야 하고, 동 검증체계는 위험수준에 따라 차등적이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주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 ④ 불만처리 및 분쟁해결로서, 추천서비스 제공자는 추천서비스 결과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과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불만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용 안내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이처럼 국내법상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만 운영되고 있어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상황임.¹⁾
-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는 콘텐츠 규제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추천 알고리즘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기술의 문제에 대응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이와는 달리 EU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이하 “DSA”)에서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추천시스템에 사용된 주요 매개변수와 이용자가 이를 수정·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며, 알고리즘 시스템 등에서 유래하는 구조적인 위험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자율 규제 성격을 가진 기존의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EU의 입법례를 반영한 것임.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적 양극화와 소셜미디어의 책임: 추천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제358호, 2025.7.23

2)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적 양극화와 소셜미디어의 책임: 추천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제358호, 2025.7.23

- 첫째, 법률에 규정된 ‘주요 기준’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함.
-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간에 조화가 요구되며, 특히 어느 범위까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지를 대략적으로라도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힐 필요가 있음.
- EU DSA의 경우, 추천시스템의 ‘주요 매개변수’에 관하여 특정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안되는 이유를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in plain and intelligible language)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최소한 이용자에게 제안되는 정보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과 해당 매개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근거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는 주요 매개변수 개념의 핵심 표지와 최소 범위를 법률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개정안보다 더 구체적인 규율로 볼 수 있음³⁾⁴⁾.
- 둘째, ‘시스템적 위협’의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므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스템적 위협’은 국내 법제에서 아직 개념이 정립되지

3) 신현아, 온라인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EU 디지털서비스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제11권 제3호, 2025, 20면.

4) Providers of online platforms that use recommender systems shall set out in their terms and conditions, **in plain and intelligible language**, the main parameters used in their recommender systems, as well as any options for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 to modify or influence those **main parameters**.

않은 새로운 용어인 만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 유형⁵⁾을 법률에서 대략적으로라도 열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하여, 사업자와 감독기관이 공통된 인식하에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투명성 확보 조치 관련 조항에서 규정하는 ‘시스템적 위험평가’에 포함되는 내용·범위를 법률 차원에서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기준 종류 및 적용 방식의 공개(제1호), 이용자 불만 접수·처리 절차 마련(제2호)과 관련한 조치 방안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과태료 근거 조항 마련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힘.

<개정안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수정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제44조의11(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의 종류 및 그 적용 방식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할 것 2.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을 전자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 3.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가 이용자의 권익	제44조의11(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의 종류 및 그 적용 방식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할 것 2.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을 전자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 3.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가 이용자의 권익

5) 허위정보·혐오표현의 대량 확산,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의 왜곡,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조장,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시스템적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완화조치를 마련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경제·문화·정치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이용자의 권익~~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적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완화조치를 마련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EU DSA와 같이 ① 이용자에게 제안되는 정보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과 ② 매개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근거 등을 포함해 공개 대상의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셋째, 알고리즘 추천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 방법 및 검증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로 인한 ‘시스템적 위험’은 플랫폼 구조, 이용자 특성, 서비스 유형 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개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영향의 범위·정도, 인과관계, 적절한 완화조치 수준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평가 및 검증 방법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을 경우, 동일·유사 서비스 사이에서도 규제 적용의 편차와 집행의 자의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알고리즘 추천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 방법이나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범자가 개정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치들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넷째, 입법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해외 사업자만을 겨냥하게 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한미 FTA는 협정 당사국 사업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원칙을 통하여 실질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1에 따른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대부분 미국 빅테크 기업에만 해당하는 경우, 상대국은 이를 사실상의(de facto) 차별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 대부분의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는 추천 알고리즘을 핵심 사업모델로 운영하는바, 이 영역에 대해 사실상 해외 사업자만 별도의 추가 규제를 두는 것은, 단순한 콘텐츠 규제 차원을 넘어 상대국 입장에서 자국 디지털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영업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즉 개정안이 국적을 직접적인 규율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더라도, 실제 적용 결과가 특정 국가의 사업자에게 편중될 경우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바, 대통령령을 통한 기준 설정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통상협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검토의견

□ 알고리즘 및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의 법적 정의가 광범위하여 모든 프로그래밍 기법이 포함될 우려가 있음.

- 알고리즘은 ‘어떠한 문제의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연산, 논리, 규칙 및 과정’이라고 정의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프로그래밍·데이터 처리 기술이 알고리즘이라는 정의에 포함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법적 정의라고 하는 광범위한 정의를 규정하게 되는 경우, 입법 취지와 달리 예상하지 못한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입법 취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정치적 편향을 발생시키는 문제 제한에 맞추어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 다만 해당 문제가 실제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단순히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위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가 사회적 양극화 또는 민주주의 기반 침해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근거와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개정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정한 조치가 수범자가 이행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은 수범자에게 시스템적 위험 정기 평가 및 완화조치 마련,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시스템적 위험"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평가 기준 및 방법론이 불명확한 상황.
- 알고리즘 추천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 방법이나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의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이 의무를 부과하려는 대상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대통령령 위임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과도한 행정규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토의견

가. 온라인플랫폼 추천알고리즘 규제 입법목적의 정당성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의 추천알고리즘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음. 확증편향, 사회적 양극화 등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추천알고리즘의 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수신자인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이러한 개정안의 목적과 내용은 기존의 개별적인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넘어 그러한 콘텐츠를 대규모로 증폭시키는 시스템의 위험을 관리하고, 사후적 제재가 아닌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적 규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입법목적과 내용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EU Digital Service Act)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상응하며, 자율규제와 이용자의 리터러시 확보를 통한 해결의 한계를 제도적 대안을 통해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⁶⁾
- 온라인플랫폼 추천알고리즘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6) NARS 현안분석, 정치적 양극화와 소셜미디어의 책임: 추천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5. 7. 23; 이성엽, EU의 디지털서비스법(EU Digital Service Act)의 시사점, 법무부 해외규제 모니터링 전문가칼럼, 2024. 1. 26.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이러한 입법목적에 근거한 개정안의 개별 규정의 내용이 실효적인지,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는지,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필요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온라인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추천알고리즘의 주요 기준 공개 의무, 영업비밀의 보호와의 균형

- 추천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공개 및 투명성보고서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자의 영업비밀의 보호와의 조화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추천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의 종류 및 그 적용 방식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하도록 규정함.
- 이 개정안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알고리즘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면밀한 고려가 필요한데, 특히, 공개 대상이 되는 ‘주요 기준’은 그 범위가 추상적이고 확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음.

- EU DSA의 경우,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⁷⁾에 대한 규정에서 주요 매개변수(main parameter)는 특정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안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이용자에게 제안되는 정보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과 매개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27조 제1항, 제2항), 마찬가지로 주요 매개변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핵심 표지와 최소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음.⁸⁾
- 또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의 검토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추천알고리즘에 대한 정보공개와 투명성보고서의 검토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나 위원회를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⁹⁾ 이는 시스템적 위험평가와 그 밖의 감독에 있어서도 동일함.

7) recommender system transparency

8) 신현아, 온라인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EU 디지털서비스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제11권 제3호, 2025, 20면.

9) 이부하, 디지털 시대 정보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 -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1호, 2024, 82면.

다. 시스템적 위협평가 의무 및 대상 기준의 적정성

-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스템적 위협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완화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 및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통해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위임한 것은 위임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 보임.
- 위임의 범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인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여¹⁰⁾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 영역은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확인하고 있음.
- 또한 시장의 빠른 변동, 역동성, 여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종류 역시 수시로 변화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용자 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특정

10) 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3.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결정으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차별취급 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 될 수 있음.

- 개정안은 ‘정치·사회적 양극화’나 ‘확증편향’ 등을 조장하는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플랫폼에 사실상의 콘텐츠 검열을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우려됨.
- 콘텐츠 자체가 아닌 추천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새로운 영역이며, 이에 대해 시민, 온라인플랫폼, 전문가(학계, 기술 분야) 등이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점진적 법적 규제와 함께 자율규제 및 이용자의 디지털 윤리의 제고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함.

3. 추가적인 논의사항: 법률의 실효성 확보

- 이용자의 설명요구에 대응하는 사업자의 설명 제공, 시스템적 위험평가는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제당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량 또한 요청되므로, 향후 하위법령을 통한 기준의 구체화 작업이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됨.

4. 결론

- 추천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를 통해 그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부응한다고 판단됨.
- 이러한 입법목적에 근거하여 추천알고리즘에 대한 규제가 합헌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보호나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법률의 명확성과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그러한 측면에서 추천알고리즘 공개의무에 있어, ‘주요 기준 공개’의 범위 명확화,시스템적 위험평가 의무 대상 기준의 구체화 필요성이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에서 추천알고리즘 규제를 담당할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나 위원회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231